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843호
2. 발 의 자 : 김형재 의원
3. 발의일자 : 2023. 5. 30.
4. 회부일자 : 2023. 6. 5.

II. 제안이유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용시설로서 폐교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를 명시함(안 제26조제5항제10호)

III. 주요내용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용시설로서 폐교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를 명시함(안 제26조제5항제10호)
2.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감액하여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율을 명시함

(안 제28조제3항)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5월 30일 김형재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843호로 제출되어 2023년 6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폐교재산의 대부료율 및 대부료의 감액 비율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폐교재산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폐교활용법’)」 제2조제2호1)에 따르면 학교가 폐교되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 중 공유재산을 의미합니다.
- 이와 같은 폐교재산은 ‘폐교활용법’ 제5조제1항2)에 따라 시·도교

-
-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1. 생략
2. “폐교재산”이란 폐교되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 중 공유재산을 말한다.
3. ~ 7. 생략
 - 2)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
 2. 해당 폐교가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어업법인
 3. 해당 폐교가 있는 시·군·구에 소재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어촌계

육감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으며 시·도교육감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3)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할 경우 연간 대부료율은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먼저 전국 시·도교육청의 폐교 현황을 살펴보면, 전남(839교), 경북(737교), 경남(585교) 등의 지역에 폐교수가 상당히 높으며, 이 지역들은 이미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소득증대시설 등 다양한 형태로 대부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표-1] 참조).

[표-1] 시·도교육청 폐교재산 현황 (2023.3.1. 기준)

(단위: 교)

시도 교육 청	폐교 학교 수 (A=B +C)	매각 완료 (B)	보유 (C= D+E)	활용현황								
				대부(임대)							자체 활용	계 (D)
				교육 시설	사회복 지시설	문화 시설	공공체 육시설	소득증 대시설	기타	소계		
서울	4	1	3	-	-	-	-	-	-	-	-	-
부산	48	20	28	2	-	-	-	-	-	2	24	26
대구	37	20	17	1	-	-	-	-	1	2	15	17
인천	59	40	19	3	1	-	-	-	-	4	8	12
광주	14	8	6	1	-	2	-	-	-	3	3	6
대전	8	5	3	1	-	-	-	-	-	1	1	2
울산	27	10	17	-	1	-	-	1	-	2	11	13
세종	13	12	1	-	-	-	-	-	-	-	1	1
경기	179	58	121	36	2	8	3	10	3	62	42	104
강원	479	276	203	24	2	11	1	78	5	121	27	148

- 3)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폐교활용법 시행령')」 제3조(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등) ① 생략
 ②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율은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2항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③~⑤ 생략

시·도 교육청	폐교 학교수 (A=B+C)	매각 완료 (B)	보유 (C= D+E)	활용현황								
				대부(임대)							자체 활용	계 (D)
				교육 시설	사회복 지시설	문화 시설	공공체 육시설	소득 증대 시설	기타	소계		
충북	260	131	129	19	7	8	-	45	1	80	28	108
충남	271	216	55	8	-	1	2	2	-	13	24	37
전북	327	272	55	2	2	4	-	1	-	9	39	48
전남	839	658	181	15	2	4	-	14	2	37	61	98
경북	737	496	241	45	5	21	4	17	28	120	67	187
경남	585	360	225	36	8	16	4	26	4	94	56	150
제주	35	4	31	1	-	3	1	10	1	16	4	20
계	3,922	2,587	,335	194	30	78	15	204	45	566	411	977

- 한편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현재까지 폐교된 학교수는 총 4개교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낮은 상황이나, 서울시에서도 도심공동화,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고 있어, 1999년에 처음 폐교가 발생한 이후 2020년에 2개교, 2023년에 1개교가 지속적으로 폐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표-2] 참조).
- 이 중 1999년도에 폐교된 서울오곡국민학교는 2003년에 매각되었고 나머지 3개교 중 2020년에 폐교된 염강초는 유아체험시설로, 공진중학교는 환경교육체험관(에코스쿨)으로, 화양초등학교는 예술문화교육지원시설로 서울시교육청이 자체 활용할 계획입니다.
-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상기한 3개 폐교에 대해서는 자체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향후 발생하는 폐교의 경우 대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는바, 폐교재산의 대부 등 폐교 활용에 대한 종합 계획 수립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표-2] 서울시교육청 폐교 현황

연번	교육지원청	폐교명	본분교	학교급	폐교년도
1	강서양천	서울오곡국민학교	본교	초	1999 ⁴⁾
2	강서양천	염강초등학교	본교	초	2020
3	강서양천	공진중학교	본교	중	2020
4	성동광진	화양초등학교	본교	초	2023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폐교재산을 대부할 경우 대부료율 및 대부료 감면 사항 등을 ‘폐교활용법’에 따라 조례에 적용한 것으로 향후 서울시교육청 폐교재산의 다양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나. 안 제26조제5항제10호 및 안 제28조제3항 신설에 대한 검토

- 동 개정조례안은 대부료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규정한 동 조례 제26조제5항에 제10호를 신설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용시설로서 폐교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였고,

대부료 등의 감면을 규정한 동 조례 제28조에는 제3항을 신설하여 “대부료 감면율을 교육용시설의 경우 연간대부료의 1,000분의 500, 지역주민이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간대부료의 1,000분의 300”을 규정하였습니다.

- 먼저 안 제26조제5항제10호와 관련하여 ‘폐교활용법’ 제5조⁵⁾ 및 ‘폐교활용법’ 시행령 제3조⁶⁾에 따르면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

4) 2003.8.12. 매각.

5)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6)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폐교활용법 시행령’)」 제3조(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등) ① 생략

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등의 폐교재산을 대부할 경우 대부료율은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에 동 개정조례안에서 공유재산 대부료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규정한 안 제26조제5항제10호에 ‘폐교재산활용법 제2조제3호7)에 따른 시설중 교육용시설로 폐교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를 신설하는 것은 상위법의 대부료율 하한선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안 제28조제3항의 신설과 관련하여 ‘폐교활용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8)’에 따르면 대부료의 감액비율은 교육용시설 등의 경우 연간대부료의 1천분의 500,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는 연간대부료의 1천분의 3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율은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2항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③~⑤ 생략

7)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1. ~2. 생략

3. “교육용시설”이란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5.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공공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소득증대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또는 같은 조 제1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8)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대부료의 감액 등)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감액하여 대부하는 경우 연간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제3조제2항에 따른 연간대부료의 1천분의 500

2.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제3조제2항에 따른 연간대부료의 1천분의 300

안 제28조제3항제1호에서 교육용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간대부료의 1,000분의 500을,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지역주민⁹⁾이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연간대부료의 1,000분의 300을 대부료 감면율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감면율 상한선을 준수한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8833, 2023.6.8.).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이준석 2180-8263	입법조사관	이가영 2180-8270
----------	------------------	-------	------------------

9)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조(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란 각각 폐교재산의 매각 또는 대부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실제로 거주 중인 주민을 말한다.

1.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0호에 따른 학생통학구역(通學區域)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폐교가 소재한 시·군·구(「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